

-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가 임차인 모집은 [2022.10.11.(화)]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진행하며, 이는 청약신청자의 자격조건(나이, 무주택세대구성원 등)의 판단기준입니다.
- 본 주택의 청약 자격은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[2022.10.11.(화)] 현재 무주택자(청년 특별공급)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일반공급, 신혼부부, 고령자 특별공급)이면서,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**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**을 따릅니다.
- 본 주택은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
-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[2020.12.29.(화)] 당 사업지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.

### 1. 잔여 세대 공급내역

- 공급 규모 : 495세대 중 잔여 121세대
- 잔여 타입 공급내역

유형	타입	공급세대수	비고
일반공급	84A / 84B / 84C / 84D / 84E 84F / 84G / 84H / 84I / 84J	103	청약자격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와 동일
	84K / 84L / 84M / 84N 84O / 84P / 84Q / 84R	18	
합계		121	

\* 세부 타입선택 불가(추첨의 방식에 따라 타입 선정)

### 2. 계약조건 및 임대보증금

구분	계약금(1차)	계약금(2차)	중도금	잔금
납부금액	1,000만원	10%이내 차액	40%	50%
납부시기	계약시	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	'22.12.20.	입주시

### 3. 청약신청 /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

#### ■ 주요 일정

구분	청약신청	당첨자발표	계약	비고
일정	'22.10.17(월)~18(화) 10:00 ~ 17:00	'22.10.19(수) 12:00	'22.10.24(월)~26(수) 10:00 ~ 17:00	- 추첨 전문업체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동·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. - 임차인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유형별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. -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계약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.
방법	인터넷 접수	사업주체 추첨		
장소	당사 홈페이지	당사 홈페이지	당첨자 별도 안내	

### 4.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1순위 (100% 이하)	3,212,113원	4,844,370원	6,418,566원	7,200,809원	7,326,072원	7,779,825원	8,233,578원	8,687,331원
2순위 (110% 이하)	3,533,324원	5,328,806원	7,060,423원	7,920,890원	8,058,679원	8,557,808원	9,056,936원	9,556,064원
3순위 (120% 이하)	3,854,535원	5,813,243원	7,702,279원	8,640,971원	8,791,286원	9,335,790원	9,880,294원	10,424,797원

- \*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453,753) \* (N-8), 100% 기준} \*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\*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  
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- \*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+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년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\*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### ■ 계약시 구비서류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				
공통서류 (일반 / 특별공급)	○		계약금 무통장 입금증	본인	·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(현금 및 수표) 수납 불가	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	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, 대리인 신청 불가	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본인 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○		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	배우자	·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
	○		추가 개별통지 서류	본인	·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	
특별 공급 유형별	공통서류	○	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	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분양사무실 비치	
		○	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	본인 또는 배우자	·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	
	청년	○	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	
		○	부모의 소득 관련서류	직계존속	·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	
	신혼 부부	혼인 상태인 경우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서,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	○	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혼인 예정인 경우	○	결혼 확인 서류	본인	· 서약서(분양사무실 비치)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			○	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예비배우자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
	고령자	○	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예비배우자	·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	
○		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	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(배우자 포함)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(계약자)	본인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	
	○		위임장	-	· 분양사무실 비치,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	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	

·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2.10.11.(화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